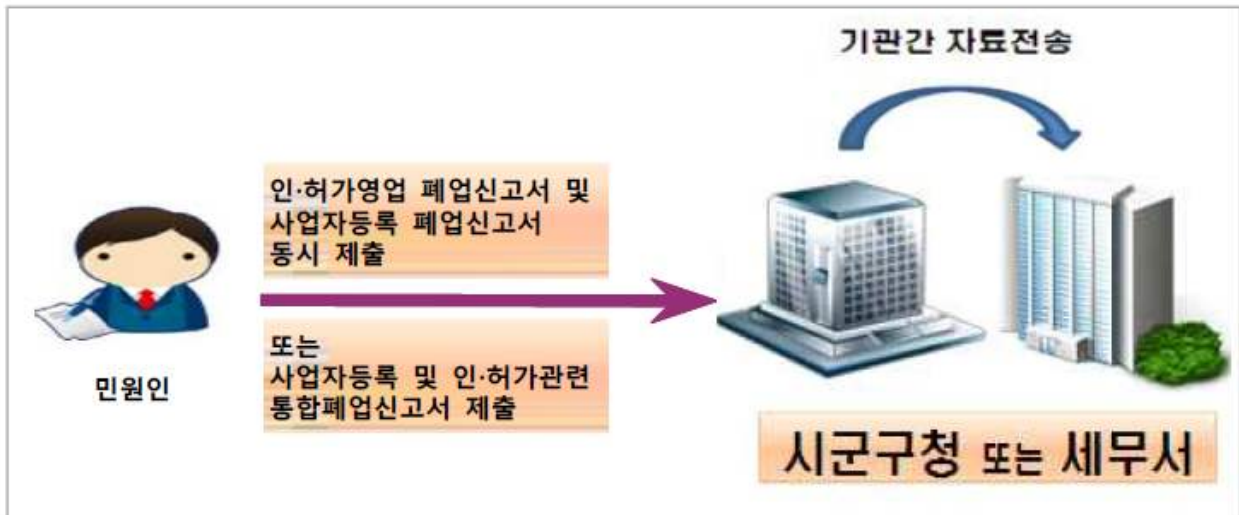


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

-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: 시군구청 및 세무서 **각각 방문**



-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: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**중 한 곳만 방문**



- [법적근거]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
- [대상업종] 53종 【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 별표3】
- [통합폐업신고서]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

※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(이송)한 후 담당업무 처리 (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)